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1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 2022년 결산 시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세무 및 법률정보

-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출처: 금융위원회, 2022. 12. 22]

추진배경

I. 추진배경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월)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2.12.22.~'23.1.30.)를 진행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규정)

□ 한편, 회계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사유 준비를 비롯해 現 제도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미비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

II. 주요내용

1.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 (시행령§4)

○ (현행)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회계개혁('18년)시 도입된 개념으로,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 (개선)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현행 자산 1천억원 유지 기업 : ①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i) 비상장회사의 ①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②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합니다.

ii) 또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인 기준을'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2.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외감규정 별표7)**

-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습니다.

\* 現 외감규정상(별표 7) 3.조치등의 가중·감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조치 1 단계 가중

- (개선)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외감규정§6)**

- (현행) 상장협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 현재는 상장협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회계업계 4, 기업 2, 학계 3, 기준원 등 유관기관 4)에서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 제정  
 ○ (개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 합니다.

※ 내부회계 설계·운영 기준은 기업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상장협 자율규정 활용

**4.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시행령§32, 외감규정 §26/별표 8, 포상규정 별표)**

- (현행) 현행 법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서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증선위 제재조치 완화(과징금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 엄격한 요건\*과 낮은 수준의 포상금 규모\*\*로 인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에만 과징금 등 조치 감경이 가능

\*\* 최근 6년간(‘16~’21년, 24건) 건별 포상금 지급규모는 3~4천만원 수준에 불과

- (개선)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완화와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 배 이상)를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i)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증선위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①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②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③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ii) 또한,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차감요소는 필수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합니다.

※ 포상금 산정액=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10개 등급→4개 등급)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상향

\*\* 자의적이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 삭제(기존 8개→3개) 및 가중치 하향

향후일정

III. 향후일정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3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결산 시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022. 12. 27]

주요내용

□ 2022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은 자금흐름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③ 경영진·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④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해야 합니다.
- ⑥ 감사절차별 감시시간, 인원수 등을 회사·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⑦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회계결산 및 외부  
감사관련 유의사항

I.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대상)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미제출 시 공시)상장법인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함

\* (상장법인)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분  | 세부 내용   |   |               |
|---|---|---|---------------|
| 제출대상  | ☐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   |               |
| 제출서류  |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식<br>※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   |               |
| 제출처   | ☐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br>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 제출시점  |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   |               |
|   | 구분  | 일반회사  | 회생절차 진행회사     |
|   | 별도(개별)재무제표  | 정기주총일 6주전*  |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
|   | 연결 재무제표   | K-IFRS 적용<br>정기주총일 4주전*                           |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
|   | K-IFRS 미적용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br>(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
|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   |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      |  |
|------|--|
| 제출대상 | ☐ 주권상장법인   |
| 제출처  |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 공시내용 |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
| 공시시점 |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br>*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

☐ (점검 결과)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상장법인의 위반회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제출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19~'20년 크게 증가

\* (상장법인) 49사('16년)→39사('17년)→49사('18년)→24사('19년)→24\*사('20년)

(비상장법인) 284사('16년)→107사('17년)→75사('18년)→182사('19년)→140\*사('20년)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1.)에 따라 1천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도 제출의무 부과

◦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매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음

-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제출하지 않음

\* ('18년) 49사 중 46사 → ('19년) 24사 중 24사 → ('20년) 24사 중 20사

**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나 회계처리방법 자문 의뢰 금지

◦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주요위반예시**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이를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함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리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 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당겨져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제출처 오인) 상장법인인 G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함

□(법규 인식 미비) 자산 1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2회계연도는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 이상) → '22년(1천억원 이상) → '23년(전체, 1천억원 미만 면제 예정)

(개요)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비고 | 설명  |         |  |
|----|---|---------|--|
| 대상 | 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         |  |
| 운영 |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         |  |
| 검증 | 내부  | 대표자     | 자체 운영실태 점검<br>(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    |   | 감사(위원회) |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br>(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    | 외부  | 외부감사인   | 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br>(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

②(감사 의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부정위험)최근 대형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여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동 발간('22.12월)

**유의사항**

☐(회사)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

◦자금횡령 등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점검

☐(감사인)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적절한 수준의 전산감사를 활용

**3. 내부회계 취약점 발견 시 적극 공시·개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내용(운영실태·평가보고서)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상의 예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

◦ 경영진·내부감사인은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평가 결과를 충실히 공시해야 함

※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감리 제재 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외감규정 개정 추진\* 중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22.12.22.)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개선 관련 추진내용>

|             |  |
|-------------|--|
| <b>추진내용</b> | <p>☐ <b>(현황)</b>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음</p> <p>☐ <b>(개선)</b>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 마련(☞외감규정 개정 추진)</p> |
|-------------|--|

**유의사항**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 공시·개선



**4.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금감원은 '22.6월 심사·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하여 '23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①수익 인식, ②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③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④사업결합

◦'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공통)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①(수익 인식)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②(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비현금거래 등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③(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④(사업결합)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해야 하며,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5. 회계오류 예방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회계오류 예방·정정)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감사인은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여야 함

\*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후 회사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의 중요한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 비교재무제표 수정 또는 전기재무제표 재발행을 결정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재감사 여부 및 감사주체, 당.전기 감사인 및 경영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2019년 개정)]

□ (회계오류 자진정정 감경) 착오,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

◦ '고의', '중과실'에 따른 위반은 재무제표 감리로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1년 중 160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410회(재무제표 정정은 320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15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 전체 상장회사('21년말 2,487사)의 6.4%

**유의사항**

□(회사)주요. 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기준 적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과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

□(감사인)회사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없도록 적합한 감사절차의 설계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공통)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된 자료의 수정 등\*을 결정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이 협의한 뒤,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을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①주요 협의내용, ②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6. 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리 및 공시 철저**

-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력과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도록 계획·수행하여야 함
    - 감사절차별 감사 소요시간, 참여 인원수 등은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
  - 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문서화하여야 함
    -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감사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지는 확인 필요
- ※('21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점검대상 회사(2,721사) 중 63사\*는 감사보수 및 시간을 누락하거나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며, 계약내역과 실제 수행내역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

**유의사항**

- (회사) 감사시간, 인력 등의 투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정확히 공시되었는지 확인
- (감사인)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을 정확히 산정·기재하여 제출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 활용**

- 회사는 주요 질의회신 사례 및 과거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 시 적절히 활용할 필요
    - 주요 질의회신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공개
    - 주요 심사·감리결과 지적 사례는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업무자료→회계→자료실→회계감독 동향자료에서 회계현안설명회 설명자료(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등 참조

[참고]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지적 사례

□ A사는 지주회사 전환 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세무상 원가법 적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 B사는 관계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어 동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C사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미래에 배당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세효과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였으나, 배당세율 산정 시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고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D사는 종속기업의 유상증자로 증가한 자본잉여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 연결자기자본 과소계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배당·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함

**유의사항**

□(공통)충실한 회계 결산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질의회신및 감리 지적 사례 등을 적극 활용

**향후계획**

**II. 향후 계획**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이 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1.19.~2.3.),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국기령 §1의 2①)

| 현행   | 개정안   |
|--|---|
| <input type="checkbox"/>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촌 이내의 혈족</li> <li>○ 4촌 이내의 인척</li> <li>○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li> <li>○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촌 이내의 혈족</li> <li>○ 3촌 이내의 인척</li> <li>○ (좌 등)</li> <li>○ (좌 등)</li> <li>○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li> </ul> |

<개정이유>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  
<적용시기> '23.3.1. 이후 시행

2.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 (국기령 §52의 3 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65⑥)>

□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심사·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취소·경정 또는 필요처분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input type="checkbox"/>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li> <li>②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li> </ul> |

<개정이유>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운영 방식 명확화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 의 6)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특별세액공제<br>○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br>○ (공제대상)<br>-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br>-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br>-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br><p style="text-align: center;"><b>&lt;추 가&gt;</b></p> |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추가<br>○ (좌 동)<br>- (좌 동)<br>- (좌 동)<br>- (좌 동)<br>- 대학입학전형료 |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소득령§212 의 4, 법인령§164 의 2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3 의 3, 법인법 §121 의 2 신설)>

|   |
|---|
|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br>○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b>관할 세무서의 확인</b>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br>○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br>○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b>5만원</b> 이상<br>○ (발행절차)<br>① 신청인은 <b>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b> 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br>②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b>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b><br>③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b>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b><br>④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b>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b> |

<개정이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3.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령 §214)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br><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br><input type="checkbox"/>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br><input type="checkbox"/>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br><input type="checkbox"/> 식사 또는 식사대 | <input type="checkbox"/> 제출 면제대상 조정<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삭 제> |

<개정이유>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 (소득령 §211)

< 법 개정내용(법인법 §94 의 2②·③)>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의무<br><input type="checkbox"/>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계산서 발급 의무<br><input type="checkbox"/> (예외) 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br>- 노점상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br>-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br>-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용역 |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

<개정이유> 외국법인 세원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등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소득령 §26 의 2)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적격펀드*의 벤처기업등 주식거래·평가손익 비과세<br>*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br><br><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br>- 적격펀드가 직접 취득<br>-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br><br><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 <input type="checkbox"/> 거래·평가손익이 비과세되는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 추가<br><br><input type="checkbox"/> (좌 동)<br><br>- (좌 동)<br>- (좌 동)<br><br>-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br>* ①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br>②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경우부터 적용

8.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확대 및 소득범위 명확화 (소득령 §150 의 6, 150 의 12, 150 의 15)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등<br><br><input type="checkbox"/> (납세의무자)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br><br><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br>-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부터 소득<br><br><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 <input type="checkbox"/>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및 과세대상 명확화<br><br><input type="checkbox"/> (납세의무자) 거주자<br><br><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국외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br><br>- (좌 동)<br><br>- 집합투자증권 환매등 이익<br>-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br>-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대상 소득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소득령 §155④)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①+②<br>*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br><br>①(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br><br>②(종전주택 양도기한)<br>-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br><br>*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br><br>-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input type="checkbox"/>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br><br><br>○ (좌 등)<br><br>○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u>3년</u> 이내 |

<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득령 §167의 3④12의 2, §167의 4③6의 2, §167의 10④12의 2, §167의 11④12)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br><br>○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br>○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br>○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br>○ 장기사원용 주택<br>○ 상속주택, 문화재주택<br>○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br><br>○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br><br><br>- (좌 등)<br><br>○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11.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법인령 §2⑥ 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2)>

- 연결지배(90%이상 지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 비율 계산
  -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간접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li> </ul> </li> </ul> |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구체화

12.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법인령 §164)

| 현 행  | 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면제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li> </ul> </li> </ul> |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13.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법인령 §120 의 17)

< 법 개정내용(법인법 §76 의 19)>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자법인에게 결손금에 비례하는 0보다 작은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 추가(대통령령)

| 현 행  | 개 정 안  |
|--|--|
| <p><input type="checkbox"/>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p> <p>①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에 비례 배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math display="block">(A)^* \times \frac{\text{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text{ (0보다 큰 경우 한정)}}{\text{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 \text{ (0보다 큰 경우 한정)}}</math> </div> <p>* (A)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br/>                     ** 수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 <p><input type="checkbox"/>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p> <p>① (좌 동)</p> <p>②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math display="block">(A) \times \frac{\text{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 \text{연결수정결손금}}{\text{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 (= (A))}</math> </div> |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시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소득배분 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령 §17 의 4, 상증령 §56④)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 의 4)>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 해외자회사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li> </ul> </li> <li>□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li> <li>*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li> <li>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li> <li>*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li> <li>-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li> </ul> </li> </ul> </li> <li>□ 조문 정비사항(상증령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 포함</li> </ul> </li> </ul> |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1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법인령 §94㉔)

< 법 개정내용(법인법§57㉕)>

|  |
|--|
| <input type="checkbox"/>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해외자회사 요건을 완화(25→10%)<br>*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br>○ 구체적인 해외자회사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br>○ 적용대상 해외자회사<br>- 지분을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br><신 설> | <input type="checkbox"/>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br>-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br>·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부분은 제외

16.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 (상증령 §15의㉓)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피상속인요건<br>○ (지분 요건)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br>*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input type="checkbox"/>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br>○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이상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7. 중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 (중부세령 §4의2①)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중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br>*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br>○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br>○ 2년 → 3년 |

<개정이유>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영 시행일 전 일시적 2주택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1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부가령 §71①9)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br>○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br>○ (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br>-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br>- 소매업,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br>-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br>- (좌 동)<br>-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

<개정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국조령 §25)

| 현 행   | 개 정 안   |
|---|---|
| <p>□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처분 절차</p> <p>○ 해당금액 반환 여부 확인 전 :</p> <p style="padding-left: 20px;">임시유보 처분</p> <p style="padding-left: 20px;">- 다만 ①~③의 경우 즉시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p> <p>①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p> <p>②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p> <p>③ 과세당국 결정·경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척기기간이 만료되는 경우</p> <p>○ 배당 지급 간주 시점</p> <p style="padding-left: 20px;">- 이전금액통지서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p> | <p>□ 임시유보처분 규정 합리화</p> <p>① <b>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 및 이전소득금액 처분확인서</b>를 제출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40px;">(좌 등)</p> <p style="padding-left: 40px;">(좌 등)</p> <p>- (과세당국 처분 시) 이전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p> <p>- (납세자 처분 시)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p>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조특령 §9①)

| 현 행  | 개 정 안                                      |
|--|--|
| <p>□ R&amp;D비용 세액공제 제외 비용</p> <p>○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출연금</p> | <p>□ <b>제외대상 비용 명확화</b></p> <p>○ (좌 등)</p> |
| <p>○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p>        | <p>○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p>       |

<개정이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1.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 §34, §36)

< 법 개정내용(국조법 §16②)>

- 국제거래 자료\* 중 국제거래명세서에 대한 제출면제 근거 추가  
 \* ①국제거래명세서, ②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③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 구체적인 제출 면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면제요건  | <input type="checkbox"/> 제출면제 요건 신설 및 추가   |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①~③)</li> <li>① 재화거래금액(합계) 5억원 이하</li> <li>② 용역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li> <li>③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약손익계산서 면제</li> <li>-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li> <li>-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li> <li>-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0억원 이하 추가</li> <li>-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자</li> <li>○ ①&amp;②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등</li> <li>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li> <li>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용역·대차거래 규모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금액 합산 항목 추가</li> <li>① (좌 등)</li> <li>② 무형자산거래를 포함하여 합계액 산정</li> </ul>                                 |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22.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br><input type="checkbox"/> 13개 분야* 260개 기술   |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br><input type="checkbox"/> 13개 분야 272개 기술  |            |                                 |            |                                 |           |                         |          |                        |
| *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br>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br>⑥ 차세대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br>⑧ 에너지·환경, ⑨ 융복합소재,<br>⑩ 로봇, ⑪ 항공·우주, ⑫ 첨단 소재·부<br>품·장비, ⑬ 탄소중립 | - (신규) 12개  |            |                                 |            |                                 |           |                         |          |                        |
| <추 가>  | < 신규 추가 기술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지능정보(1개)</td> <td>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td> </tr> <tr> <td>에너지·환경(2개)</td> <td>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td> </tr> <tr> <td>융복합소재(1개)</td> <td>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 필터 제조기술</td> </tr> <tr> <td>탄소중립(8개)</td> <td>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td> </tr> </table> | 지능정보(1개)   |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 에너지·환경(2개) |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 융복합소재(1개) |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 필터 제조기술 | 탄소중립(8개) |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
| 지능정보(1개)   |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            |                                 |            |                                 |           |                         |          |                        |
| 에너지·환경(2개)   |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            |                                 |            |                                 |           |                         |          |                        |
| 융복합소재(1개)  |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 필터 제조기술   |            |                                 |            |                                 |           |                         |          |                        |
| 탄소중립(8개)   |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            |                                 |            |                                 |           |                         |          |                        |
| <추 가>  | - (확대) 4개   |            |                                 |            |                                 |           |                         |          |                        |
|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에너지·환경(2개)</td> <td>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td> </tr> <tr> <td>탄소중립(2개)</td> <td>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td> </tr> </table>   | 에너지·환경(2개)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 탄소중립(2개)   |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           |                         |          |                        |
| 에너지·환경(2개)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            |                                 |            |                                 |           |                         |          |                        |
| 탄소중립(2개)   |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            |                                 |            |                                 |           |                         |          |                        |

<개정이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639, 2022.12.27)

(사실관계)

- '21.9.23.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A비상장법인 주식 187,500주(지분율 100%)를 상속받음.
- A비상장법은 신청인의 부친이 25년 이상 경영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인은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
- '22.5.4. A비상장법인은 상속받은 주식 중 76,500주를 균등유상감자하는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승인을 받고, '22.5.5.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질의요지)

- 가업상속공제 후 유상감자한 경우로서 상속인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위반인지

(회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1575, 2022.12.23.)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1-국제세원-6687, 2022.12.1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로봇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AI 음성 제어 및 스마트 지원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
-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국법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차량용 정보시스템을 제작함.

## (질의요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원시코드사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개작 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업 무 소 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
| 발행인  | 한울회계법인  |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